

협력사 행동규범

규정번호 : KDS-B-4601

전 문

주식회사 경동나비엔, 주식회사 경동원, 주식회사 경동에버런, 주식회사 경동폴리움 및 주식회사 경동티에스(이하 '경동'이라 합니다)는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구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으며, 협력사와 경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이에, 아래와 같이 『경동 협력사 행동규범』(이하 '행동규범'이라 합니다)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
본 행동규범은 (1) 윤리 경영, (2) 노동/인권 경영, (3) 환경, (4) 안전/보건, (5) 경영시스템 구축 등 5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경동과 거래하는 전 협력사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,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, 임직원을 존중하는 문화 및 윤리적 기업 경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.

단,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우선합니다.

경동은 본 행동규범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고 협력사와 함께 건강한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

제1장 윤리 경영

1. 청렴성 준수 및 부당이익 금지

- ① 협력사는 모든 사업적 거래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.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②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 수수, 부패 행위,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.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뇌물이나 다른 대가를 제안/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되며,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.
- 경동의 임직원(경동의 관계회사의 임직원과 각 임직원의 가족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 - 경동의 임직원에게 사회통념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 - 경동의 임직원에게만 허용된 의도적인 판촉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 - 경동의 임직원에게 향응 또는 접대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 - 경동의 임직원에게 출장 지원, 개인 휴가 지원, 사무실 비품 제공, 협찬 또는 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 - 경동의 임직원과의 증여, 매매, 부채상환, 보증, 금전대차 등 재산 상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또는 그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
 - 경동의 임직원에게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거나, 합작투자 또는 ABC의 회사에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 등을 요구하는 행위.
 - 경동의 임직원에게 ABC의 주식이나 기타 관련 업체의 주식을 제공 또는 투자하도록 하거나 기타 재산을 공동 투자 또는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 등을 요구하는 행위
 - 경동의 임직원에게 고용보장, 취업알선의 약속 등을 보장하는 행위 또는 그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
 - 본 계약과 관련하여 경동의 임직원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담합, 협정, 결의, 정보교환 등의

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

- 경동의 임직원과 공모하여 경동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방조, 교사하는 행위
 - 경동의 임직원과 공모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동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방조, 교사하는 행위
 - 경동 또는 경동의 임직원에 대하여 사기, 은폐 등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동 또는 경동의 임직원을 기망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방조, 교사하는 행위
 - 경동의 임직원과 공모하여 문서, 계수의 조작 또는 변조, 허위보고 등을 하는 방법으로 경동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방조, 교사하는 행위
 - 기타 경동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체의 행위
- ③ 협력사는 반부패 법규 관련 컴플라이언스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를 구축, 관리해야 합니다.

2. 정보 공개

- ① 협력사는 투명하게 거래하며,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/관리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비합리적인 요구를 제외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, 공개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, 감독해야 합니다.

3. 지적재산권 보호

- ① 협력사는 모든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, 기술/노하우 이전 시 해당 지적재산권 보호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경동과의 거래를 통해 확보한 경동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- ③ 협력사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,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4. 책임있는 조달

- ① 협력사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같은 심각성이 우려되는 분쟁광물 등을 구매 및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와 정책을 수립/운영하며 국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사용한 물질의 원산지와 거래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경동에 제공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의 경영진은 물자 사용 현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경영진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.

5.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

-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는 제보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제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6. 개인정보 보호

- ①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(협력사, 고객사, 소비자, 임직원)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보안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7. 공정거래 준수

- ① 협력사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다른 사업자와 가격, 거래 지역, 거래 조건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③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.

제2장 노동/인권 경영

1. 근로시간 및 임금

- ① 협력사는 각 국가에서 노동관계 법령상 규정된 근로시간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
- ② 협력사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, 임직원이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각 국가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합니다.

2. 인도적 대우

- ①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,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이를 위해 성희롱 예방 위원회를 두고,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별 담당자 및 신고 방법을 전사 임직원에게 공지합니다.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또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, 지체 없이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담기구를 두고 사업장 별 담당자 및 신고 방법을 전사 임직원에게 공지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

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.

3. 차별 금지

- ① 협력사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,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인종, 나이, 성별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동일한 사유로 채용, 교육, 승진, 임금, 복리후생, 퇴직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.

4. 아동노동 금지 및 연소자 근로

- ① 협력사는 모든 유형의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. 경동나비엔은 각 국가의 최저 고용 연령 이하의 인원을 피고용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② 협력사는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각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며, 연소자가 위험·유해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합니다.

5.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

- ① 협력사는 각 국가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며, 노동조합 결성, 가입,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 혹은 차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제3장 환경

1. 환경 경영 기본 방침

- ①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, 개정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/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의무 인허가사항(배출/방지시설 설치 等)을 취득, 유지하고 개정사항을 적시에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행정처분 발생 시, 이에 대한 내용을 즉시 경동에 공개하여야 합니다.
- ④ 협력사는 행정처분 내역을 3년이상 이력관리 하여야 합니다.
- ⑤ 협력사는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,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.
- ⑥ 협력사는 연간 환경 투자금에 대한 집계를 공개해야 합니다.

2. 대기오염물질 관리

- ① 협력사는 생산 활동 중에 발생된 대기오염물질 특성을 파악하고,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적정 대기오염방지 설비 운영 현황 및 효율을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목표 및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.

3. 기후 변화 대응

- ① 협력사는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,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여 3자 검증을 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, 년간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

4. 폐수 관리

- ① 협력사는 물환경보전법 등 법률에 의거한 배출허용기준 이내 폐수 농도로 배출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생산 활동 중에 발생되는 폐수의 발생량 및 농도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, 저감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상시 관리 해야 합니다.

5. 폐기물 관리

- ① 협력사는 폐기물 관리법, 자원순환 기본법,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준법 운영을 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생산 활동 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량 저감 및 전량 재활용처리를 목표로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폐기물 보관에 있어, 분리 보관 및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- ④ 협력사는 제품 내 부속 혹은 포장재로 인한 사업장 외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거나, 재 활용 등급이 높은 녹색 자재를 도입하여야 합니다.

6. 유해 화학물질 관리

- ① 협력사는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거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게시 및 모든 작업자에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저감할 수 있는 물질 변경 및 설비 투자를 해야 합니다.
- ④ 협력사는 유해물질 구매, 사용, 재활용, 보관, 폐기의 전 프로세스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관리해야 합니다.

제4장 안전/보건

1. 산업 안전

-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위험(화학물질, 감전, 화재, 추락, 협착 등)에 임직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(적절한 설계, 행정적 통제, 예방적 차원의 유지 관리, 안전한 작업 절차 구축)를 취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, 임직원에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임직원 수 이상으로 제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
2. 산업 보건

-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관리기구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- ④ 협력사는 임직원의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 물품을 구비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.

3. 사고 관리

-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(감염성 질병 포함)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

축해야 합니다.

- ②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,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.
- ③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,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4. 기계 · 기구 · 설비의 안전 관리

-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생산설비, 기구, 기계 안전성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힐만한 위험 설비 작업 시, 물리적 보호 장치, 방벽, 보호장치를 제공하고,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.

5. 비상상황 대비

- ①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비상상황 상황 종료 후, 복구 계획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합니다.

6. 기숙사 및 위생시설 제공

- ① 협력사가 임직원에 제공하는 화장실과 식수, 식당 시설은 위생적이고 청결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가 임직원에 제공하는 기숙사 시설은 적절한 비상 출구와 소방시설, 난방, 환기장치, 개인 공간, 출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안전하고 청결해야 합니다.

7. 육체적 부담 업무 관리

- ① 협력사는 임직원에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업무(장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 하는 업무,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, 기타 체력소모가 과다한 작업 等)를 파악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
8. 안전보건교육

- ①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확인된 모든 작업장의 위험(기계, 전기, 화학물질, 화재 및 신체적 위험 등)에 대해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. 또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, 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.

제5장 경영시스템 구축

1. 기업 성명서 공시

-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 대하여 준수 의지를 문서화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공개 할 것을 권장합니다.

2. 법규 및 외부 사항 대응

-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포함하여, 최신 법률 및 규정,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.

3. 교육과 소통

-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, 협력사의 정책 및 향후 목표, 실적에 대하여 근로자와 주기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.

4. 리스크 관리

- ① 협력사는 윤리 경영, 노동/인권 경영, 환경/ 안전/보건 등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.

5. 임직원 고충처리 관리

- ① 협력사는 임직원 고충 해결을 위한 제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,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합니다.

6. 파트너사 관리

- ① 협력사는 거래 협력사에도 행동규범 조항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.
- ② 협력사는 거래 협력사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, 즉시 개선을 권고해야 합니다.

부 칙

1. 시행일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